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12

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서지영·서천호·조은희

김도읍 • 이종배 • 박성훈

이헌승 · 정성국 · 김희정

윤영석 · 김소희 · 최은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5조제2항은 언론 및 방송 관계자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, 피해아동, 고소·고발인 등 아동학대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대상·유형 및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있고, 일부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 법 등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를 접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감, 불안감을 불러일으 키고 있는 실정임.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심층적인 보도가 아닌,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단지 관심을 끌 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. 한편,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동학대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공익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까지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언론인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봄.

이에,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,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'범행수단'을 추가하고,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하여 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막고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(안 제3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5조제2항 중 "사진 등"을 "사진 및 범행수단 등(이하 이 조에서 "인적 사항등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민의 알권리 보장,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행위 자의 인적 사항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인적 사 항을 특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- 2. 피해아동(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의 유족을 포함한다) 과 그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을 출판물에 싣 거나 방송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

제62조제3항 중 "500만원"을 "1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5조(비밀엄수 등의 의무) ① 제35조(비밀엄수 등의 의무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신문의 편집인・발행인 또 는 그 종사자, 방송사의 편집책 임자,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,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 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, 피해아동, 고 소인,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 소, 성명, 나이, 직업, 용모,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사진 및 범행수단 등(이하 이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조에서 "인적 사항등"이라 한 없다. <단서 신설> 다)---------. 다만, 국민의 알권리 보장,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 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의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략)

제62조(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 제62조(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 죄) ① · ② (생 략)

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•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, 방송 사의 편집책임자, 그 기관장 또 는 종사자,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

경우에는 그러하지 ㅇ	ㅏ니하다.
-------------	-------

- 1.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아동 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- 2. 피해아동(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의 유족을 포함 한다)과 그 법정대리인이 아 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 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
- ③ (현행과 같음)

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3
1천만원